

대만 금융당국의 공유플랫폼 도입 및 시사점

김연희 연구원

요약

대만 민영 건강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제와 제3자 지불제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음. 최근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는 소비자의 보험증서 관리 및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유 플랫폼을 구축·관리함. 공유플랫폼은 보전서비스와 청구서비스 영역으로 구성됨. 대만 생명보험협회는 공유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규범 제정을 통해 보험회사의 책임을 명시함. 향후 ‘소비자-의료기관-보험회사’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 증대 및 자원이용 효율화를 확대할 계획임

○ 대만 민영 건강보험¹⁾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제와 제3자 지불제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음

- 대만 생명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월 말 기준 소비자 1인당 건강보험 가입 건수는 약 3.4건이며, 매년 건강보험이나 상해의료보험금 청구 건수는 1,100만여 건임²⁾
-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은 후 보험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는 상환제를 보험금 지급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 일부 보험회사는 의료기관과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계약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정산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3자 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음³⁾

○ 최근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는 소비자의 보험증서 관리 및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슈어테크 응용 공유플랫폼(保險科技運用共享平台, 이하, ‘공유플랫폼’이라 함)”을 구축·관리함

-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개인정보 변경 시 각 보험회사에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 의료기관은 보험금 청구 서류 발급에 따른 행정부담, 보험회사는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전환 시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음
- 금융당국은 블록체인 기반 공유플랫폼을 구축하여 2020년 7월부터 6개월간 11개 보험회사⁴⁾와 보전·청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후 2021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운영함
- 2021년 5월 일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2022년까지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보험증서를 전자형태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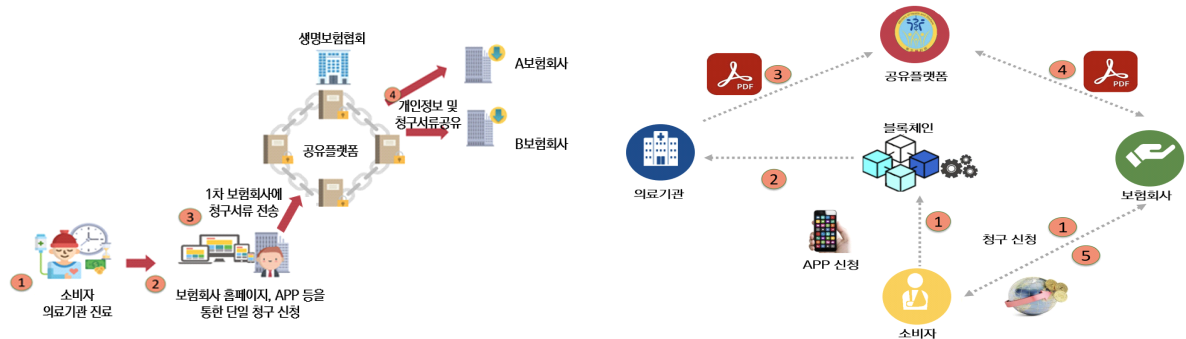
1) 대만 민영 건강보험은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생명보험을 의미함. 건강보험은 질병보험, 상해보험상품으로 분류되며, 질병보험은 암보험, 산모·신생아보험, 중증·특정상해보험상품이 있고, 질병·상해 동시에 적용되는 상품은 병원 입원보험, 장기간병보험, 장애인케어보험이 있음

2) <https://ctee.com.tw/news/finance/450310.html>

3) <https://www.rmim.com.tw/news-detail-21509>

4) 2021년 6월 기준 대만 보험회사 수는 생명보험 27개사(본사 23개, 외국회사 4개), 손해보험 23개사(본사 17개, 외국회사 6개)임

〈그림 1〉 인슈어테크 응용 공유플랫폼



자료: 국태생명보험

○ 공유플랫폼은 ①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변경하면 타 보험회사에도 일괄적으로 반영되는 보전서비스, ② 1차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의료기관이 증빙서류를 플랫폼에 전자 전송하여 보험회사 간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청구서비스 영역으로 구성됨

- ‘보전’ 서비스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한 곳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면 가입되어 있는 다른 보험회사에도 실시간으로 정보 수정이 반영되는 서비스임
- ‘청구’ 서비스는 소비자가 의료기관 이용 후 청구서류 열람 동의서와 데이터 위탁 기간을 입력하여 1차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신청하면, 의료기관은 공유플랫폼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PDF파일로 전송하고, 업로드된 서류는 타 보험회사에 자동 전달되어 보험금 청구 심사가 진행되는 서비스임
 - 청구금액이 10만 대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1차 보험회사는 청구서류의 원본을 확인한 후 심사를 진행함

〈표 1〉 보전·청구서비스 비교

신청조건	보전서비스	청구서비스
신청방식	보험회사 모바일 APP,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보험회사 모바일 APP
신청대상	만 20세 이상 행위능력이 있는 보험계약자	만 20세 이상 행위능력이 있는 피보험자
신청범위	개인보험에 한함. 단체보험, 여행자보험, 미등록보험은 적용 불가	
신청종류	유효한 생명보험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신분증 번호인 통일번호, 주소, 이메일)만 변경이 가능함	유효한 의료보험·상해보험금 지급.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계좌로 송금함.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자료: 국태생명보험

○ 대만 생명보험협회는 공유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규범 제정을 통해 보험회사의 책임을 명시함

- 2020년 12월 제정한 ‘보전·청구서비스’ 준수 규범에 따르면 1차 보험회사가 타 보험회사에 서류 전송 시 전송성공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소비자 민원 건수, 보험사기 여부를 최소 6개월마다 검토해야 함⁵⁾

5) <https://www.ithome.com.tw/news/144034>

- 전송성공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는 100%를 달성해야 하고, '보전·청구 얼라이언스 체인'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민원 건수는 해당 보험회사의 비(非)보험금 청구 소비자의 민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보험사기가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자발적으로 범죄예방센터에 신고해야 함
- 규범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함
- 공유플랫폼을 통해 청구서류를 제공받은 보험회사는 3개월 이내에 보험금 청구 관련 이미지 파일을 삭제해야 함

○ 향후 '소비자-의료기관-보험회사'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 증대 및 자원이용 효율화를 확대할 계획임

-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즉시 다수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고, 종이서류 발급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보험회사별 수집하는 데이터 표준화 및 의료기관별 성격에 따라 데이터를 정형화하면 의료기관은 체계화된 데이터 공유를 통해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청구서류를 전자파일로 받기 때문에 행정비용을 낮출 수 있고, 지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 소비자가 보험증서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전자보험증서' 서비스와 보장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험 증서통장'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6) <https://law.lia-roc.org.tw/Law/Content?lsid=FL095790>